



## 메릴랜드 주법과 HCPSS 정책 1030

-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의 종사자나 서비스 제공자들은 아동 학대 또는 방치가 의심되는 경우 하워드 카운티 사회복지부에 보고할 것이 요구되고
- 선의로 이루어진 보고에 대하여 민사 책임이나 형사 처벌에서 면제를 받으며
- 보고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정지 또는 해고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
- 서비스 제공자/자원봉사자도 학대나 방치가 일어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있을 때 보고할 것이 요구됩니다. 보고는 더 깊은 조사의 시도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
- 필요하다면, 서비스 제공자/자원봉사자는 학교의 아동 학대 연락관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. 연락관은 귀하를 대신하여 사회복지부에 보고할 수 없습니다.



## 아동 학대 연락관의 역할

- 학대나 방치로 의심되는 학생에 대한 지원을 조정합니다.
- 아동 학대 및 방치에 대한 보고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.
- 필요하다면 아동 학대 보고서 작성을 지원합니다.



## 아동 학대나 방치 보고하기

- 사회복지부에 즉시 구두로 보고하십시오.
- 48시간 내에 서면으로 후속 보고를 합니다.
- 행정책임자와 아동 학대 연락관에게 보고서 접수했음을 알립니다.
- 보고서 사본을 학생 교육 기록에 넣지 마십시오.



## 서비스 제공자의 윤리 양식

- 비밀 유지: 귀하가 학교나 교실에서 접속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비밀 유지가 됩니다.
- 서비스 제공자 / 자원봉사자로서, 귀하가 자원봉사 하면서 보거나 들은 학생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를 보호할 것이 요구됩니다.



## 방치된 아이들

### 사회복지부

- 8세가 되어야, 돌보는 사람 없이 짧은 시간 동안 혼자 있을 수 있습니다.
- 13세가 되어야, 어른이 없을 때 형제 자매나 다른 아이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.



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  
교육이사회 정책 1030 아동 학대 및  
방치에 대한 내용은 우리 웹사이트에서  
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